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받거나 탄소배출 관리에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참여기업이 탄소배출을 정량화하여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 주최/주관/수행기관 :

- 주최/주관 : 경기도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역량 제고 및 탄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 ~ '24년 11월말

□ 지원목표 :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방안 도출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탄소관리체계 수립

□ 지원내용

- 기업규모·온실가스 관련 대응현황·대응 시급성 등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

지원 유형	A유형(역량 강화)	B유형(CBAM 대응)
기업규모 및 현재 대응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님 • 환경규제 관련 대응에 경험이 없으며, 탄소배출량 관리 체계 필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 대상 중소기업 (*6개 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 수출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필요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 제고 및 EPD*(환경성적표지인증) 취득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목표수립 등 지속가능한 탄소 관리 체계를 마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이 중점 (SCOPE 1 ~ 2)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방안 제시 -기업 내 탄소중립 대응 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CBAM 보고 절차에 따른 배출량 산정 -보고서 및 배출량 산정 시트 작성 -기업 내 CBAM 대응 담당자 교육

※기업현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환경성적표지인증(EPD)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총 7대 영향범주 포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

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3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관리 관련 요구를 받고 있으며, EU 국가에 수출(예정) 중인 도내 중소기업 우선 지원

- (지원개사)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 (지원금액) 1개사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 자부담금) 99만원(VAT 포함)

□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2023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신청자격

□ 모집 우선순위(시장성평가(총 50점) 시 평가항목)

- EU 국가에 수출(예정)하고 있는 기업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6대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중인 기업
- 기업 내에 ESG/탄소국경세 관련 전담자 및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
- 컨설팅을 위해 기업 내외적으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기업
 (ex. ERP 시스템 등)
- 2022년~2023년 ESG 및 탄소국경세 교육 수료 횟수가 2회 이상인 기업
- ESG 관련 인증을 취득한 기업
- 탄소중립 역량강화 지원 및 시급성, 필요성 등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3.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4월 19일(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신청방법)

가.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3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
-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 까지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 2023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기타 - 가점 사항(시장평가 시 활용)] : 사전제출 또는 현장 평가시에 제출해도 됨.

- (對EU) 수출 증명(수출실적확인서에서 국가별 별도 제출)/수출 예정인 기업은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바이어와의 계약서), 탄소국경세 관련 6대 품목 HScode(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우선이나 자동차 관련 부품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재료 관련 기업이면 별도 표기 하면 됨), 기업체 탄소국경세(또는 ESG)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및 전담부서 증빙을 할 수 있는 조직도, ERP 시스템 구축기업(홈페이지 캡처 가능), (국내외) ESG 관련 인증서, 해외바이어 및 국내 대기업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관리 요구를 받은 문서 등 (고객사 이메일도 가능함), 2022년~2023년 탄소국경세(또는 ESG) 관련 교육 수료증 등

다. [붙임1]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모집공고문 [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 후, 별첨파일란에 첨부

□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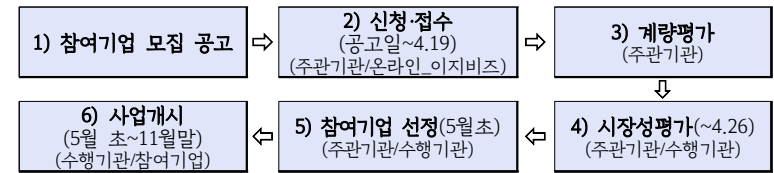
- (1차, 계량평가) 제출서류 적합/부적합 평가 → 총 50점
- (2차, 심층 시장성평가) 현장조사(담당자 인터뷰) → 총 50점
- (최종선정) 심층평가를 통해 선발된 10개 기업 최종 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공고일 ~4.19) → 계량평가 → 현장조사(담당자 인터뷰, 계량평가 통과 기업에 한함) (~4.26) → 참여기업 선정(5월초 예정)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및 선정된 참여기업은 개별 통보 예정

< 추진절차 >



* (주관기관) 경기FTA통상진흥센터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참여기업) 사업 신청 기업

[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

「2024 경기지역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 신청서

* 본 신청서는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 후 반드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1부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I. 탄소중립 수요

1. 최근 귀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외부 요구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참고, 중복 체크 가능)

구분	요구 예시
<input type="checkbox"/> 기존 거래 기업의 요구	예시: 사업장·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 목표치 공개 등
<input type="checkbox"/> 예비 거래 기업의 요구	예시: 사업장·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 목표치 공개 등
<input type="checkbox"/> 외부 환경 변화	예시: 전력 등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도입 필요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시: 투자자요구, 자발적인 선제적 대응

2. 1번에서 체크(☑)하신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나열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3. 2번에서 기술하신 내용에 대해 귀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사의 구체적 요구사항 파악 중
- 회사 내부적으로 대응을 위한 의견 조율 중
- 동종업계 대응 현황 파악 중
-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실행 준비 중
- 기타 ()

4. 2번에서 기술하신 내용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 예(0000년 내 해결 예정)
- 아니오

5. 2번에서 기술하신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유형에 대해 아래 보기를 참고하셔서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 컨설팅
- 민간 컨설팅
- 기타 ()

II. 컨설팅 효과성

1. 컨설팅 진행 시 필요한 기업의 협조 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고, 사업장 내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여 주십시오.

컨설팅 진행 협조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담당자 지정 •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기업 현황 자료 제공 (연료·에너지 사용 데이터, 고객사 요청사항 등, 제공범위 협의 가능)
협조 여부	<input type="checkbox"/> 협조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부 제한 (사유:)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23년 기준)	<input type="checkbox"/> 전력 (kWh)	<input type="checkbox"/> LPG (Nm ³)
	<input type="checkbox"/> 경유 (L)	<input type="checkbox"/> LNG (Nm ³)
	<input type="checkbox"/> 등유 (L)	<input type="checkbox"/> 스팀 (MJ)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kWh)	<input type="checkbox"/> 기타 (단위)

2.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 타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절감 설비 도입한 적이 있는지?
- 타 경쟁사 대비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
- 기타 ()

3. 귀사에서 컨설팅 결과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 기존 고객사의 탄소중립 요구 조사 및 확인
- 사내 직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 예비 고객사의 탄소중립 요구 조사 및 확인
- 기타 ()

4. 본 사업의 참여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시오.

예시: 본 사업과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의지, 본 사업 참여 및 지원의 필요성 등

[붙임2]

2024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			10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¹⁾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²⁾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너저 고용기업(4) ·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10 (최대)
참가실적 (5)	직전 2년('23, '22)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 이상(1)	5
수출실적 (13)	전년도(2023년) 수출금액 ※ 전년도(2023)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022)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사상성 (50) * [붙임4] 참조	탄소국경세(+ESG관련) 우선	(對EU)수출 및 예정인 기업, 탄소국경세 관련 6대품목, 기업체 탄소국경세(또는 ESG)전담인력/전담부서, ERP구 축기업, (국내외) ESG관련 인증 취득, 해외바이어 및 국 내 대기업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관리 요구를 받은 문서, 탄소국경세(또는 ESG) 교육 수요증 등을 고려함 - 사전제출도 가능하나 현장조사 시 제출 가능	50
참가제한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과거 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탈락 감점20점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71개

2)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붙임3]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총 387개)

※ '23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 대상 준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장착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SP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 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벨트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 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국방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 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 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Notification Portal)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 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 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용표준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통신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전자기승인)	BOKEN (일본방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 PMDA(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HOSPA (일본위생수지협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재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 → 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멕시코 (3)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1)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 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장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튀르키예(1)	TSE (튀르키예 강제인증)	-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2)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베트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장제등록제 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O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차울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허가인증)
	CPA (중국 계속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 CFDA) (중국국가식약감독관리국) 중국위생여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차울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중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rgy Label, 중 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 관리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3)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품허가제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장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 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 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국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 이트(2)	EO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80)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 보목적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 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포는위장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산물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 증)
	ISO7096 (토공기계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 에 대한 축적 시험 및 자격 검정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구격)	NON GMO
	OCS (유기농산물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산물유해대항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 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 텐안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붙임4] 현장조사(심층 시장성 평가) 요소

< 참여기업(현장조사 세부 평가 항목/ 총 50점) >

기업유형	세부 평가 항목	
기업역량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경영자 참여 의지 및 비전 최근 3년 평균 매출/영업이익 또는 증가율 등 우수성·건전성 지속가능경영 혹은 탄소중립 대응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정 여부 (對EU)수출 및 수출 예정인 기업 기업 내외적인 시스템 마련 여부 (ex. ERP시스템 등) ESG 관련 인증을 취득한 기업 	
	시급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 신청기업의 탄소중립 역량강화 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대응 컨설팅 사업의 참여 목적 부합성
		효과성 (5점)
	파급성 (5점)	

4. 기타

□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5]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다.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既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 불가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라.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마. 문의처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도지은 주임 ☎031-8064-1389, Email. dje0201@gsmba.kr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붙임 5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사업 포기 신청서**

□ 참가신청 내역

지원사업명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신청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주소			
포기사유			

당사는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4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사업』 참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가를 포기합니다.

아울러 참가신청 포기로 인한 경기도(또는 경기지역FTA센터의) 수출 지원시책 참여제한 조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귀하